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 
신고포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 
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 종 필 의원 등 8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4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6일

3. 제안이유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
- 도지사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법 제60조의2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, 운송사업자·운수종사자·운송주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·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우리 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무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시·군에 위임하였으나, 도 내 시·군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.
- 본 조례안은 도 내 시·군의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도민의 법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여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참 고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·도 중 13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 (미제정 : 전북, 경북, 제주)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14.1.9	14.9.17	14.3.3	15.9.30	15.11.1	16.12.30	17.9.28	17.9.29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12.6.29	13.8.2	17.2.28	미제정	17.12.14	미제정	21.9.30	미제정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·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2조는 법 위반행위를 한 자를 도지사·수사기관에 신고·고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연간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별로 10만원, 15만원, 20만원 및 회수금액의 10%로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,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원칙적으로 신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방법을 규정함.
- 안 제11조는 본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'23. 4. 12.~4. 1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**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**

-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, 별표, 2개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, 법에서 위임된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다만 본 조례안 이전에도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에 따라 시·군에 위임된 사무였으나, 시·군에서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극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, 본 조례안 제정 이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·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,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,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이미 법령과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에 따라 도 내 시·군이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,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·군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시키고,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